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2022.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132
----------	--------

2022. 12. 1.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
- 나. 제 출 일 : 2022. 11. 15.
- 다. 회 부 일 : 2022. 11. 18.

2. 제출이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부터 ~ 제9조까지)
- 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 제13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2. 10. 6.~ 2022. 10. 26.(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자율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예방하며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3개,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마포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표명하고 있고,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를 담고 있음.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민간 활동의 지원과 동시에 사업자 및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법제화 함.
- 안 제4조는 환경교육의 시책 등 전문가 의견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 하였음.

- 안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기초소양을 어릴 적부터 갖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사업자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내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과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1.6.)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구민 모두가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마포구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종전 「환경교육진흥법」보다 주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며,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제정 목적 및 취지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 보임.
- 다만, 법령에서는 정부의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계획 수립은 의무화 되고 있지 않음.

- 하지만, 마포구 환경정책에 따른 환경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마포구만의 환경교육계획이 필요해 보이므로,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반영 등 환류 차원의 목적과 마포구 환경교육을 정밀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필수불가결해 보임.
- 한편, 서울시 보도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향후 광역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광역-기초지역간 환경교육센터를 주축으로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표¹⁾한 바 있음.
- 현재, 마포구도 2020년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음. 이는 환경교육의 증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이나, 현재 시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교육이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점과 향후 시비 지원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타당한지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2021.3.29. 뉴시스 “서울시, 2025년까지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 구축”

<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

■ 지정 · 운영 현황

- 기관명 : (사)자연의벗연구소(센터장 : 박선하)
- 소재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29, 2층
- 지정기간 : 2020. 6. 10. ~ 2022. 12. 31.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개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대상 : 전 구민
- 사업내용 : 관내 풀뿌리 환경교육단체 네트워크 사무국 역할 추진

■ 2022년도 추진실적(2022. 7. 31. 기준)

- 2022. 5.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
- 2022. 8. ~ 12. : 사업추진(마포환경교육한마당 운영, 홍제천 생물다양성 탐사 등)
- 2022. 12.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제출

■ 소요예산(시비 10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증감
목	세목			
계		10,000	10,000	-
민간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	10,000	-

< 타 자치구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

- '20년 지정(5개소) : 도봉, 마포, 서초, 영등포, 종로 ※지정기간: '22.12.31.만료
- '21년 지정(4개소) : 구로, 서대문, 은평, 중구 ※지정기간: '23.12.31.만료
- '22년 지정(4개소) : 중랑, 금천, 강서, 서대문2호 ※지정기간: '24.12.31.만료

[관 계 법 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